

광명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

전문개정	2002. 5. 27	규칙 제 805호
개정	2003. 12. 23	규칙 제 828호(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)
	2004. 6. 25	규칙 제 834호(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)
	2008. 6. 16	규칙 제 938호(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)
일부개정	2010. 12. 15	규칙 제 997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)
일부개정	2019. 6. 25	규칙 제1206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(이하 “대행”이라 한다) 및 직무대리(이하 “대리”라 한다)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대행 및 대리) ① 「지방자치법」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실·국의 순위에 의한 실·국장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. <개정 2003. 12. 23, 2008. 6. 16, 2019. 6. 25>

② 실·국장(4급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포함)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 과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. <개정 2003. 12. 23, 2004. 6. 25, 2019. 6. 25>

③ 담당관·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담당관·과의 직제상 팀 순위에 의한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. <개정 2003. 12. 23, 2010. 12. 15, 2019. 6. 25>

④ 사업소의 장(5급)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소의 직제상 팀 순위에 의한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. <개정 2010. 12. 15, 2019. 6. 25>

⑤ 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팀 순위에 의한 팀장 또는 차하급자 중 동일직급 임용일 선순위자가 대리한다. <개정 2010. 12. 15, 2019. 6. 25>

제3조(지정대리)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

광명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

또는 시장이 특히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.

제4조(책임)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3. 12. 23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부칙 <2004. 6. 25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부칙 <2008. 6. 16 규칙 제938호,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0. 12. 15 규칙 제997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부터 ㉙ 까지 생략

⑳ 광명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과 제4항 중 “담당·팀”, “담당·팀장”을 각각 “팀”, “팀장”으로 한다.

제2조제5호 중 “6급 주무”를 “사무장”으로 한다.

㉑ 부터 ㉔ 까지 생략

부칙 <2019. 6. 25 규칙 제1206호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2호 서식 중 결재란의 “사무장”을 “팀장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3호 서식 중 결재란의 “사무장”을 “팀장”으로 한다.